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선람 | 기관의 장 |
|---|---|
| | |

# 공 보

**제727호 2017. 5. 10.(수)**

## 안내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람 | | | | | | | | | |
|---|---|---|---|---|---|---|---|---|---|

발행 : 대구광역시 서구 편집 : 문화홍보과(TEL : 663-2161, FAX : 663-2169)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

##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3호 3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5호 10


## 규 칙


⊙ 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2호 21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3호 2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5.18.)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횟수 변경

○ 영유아간식비 지급기준에서 서구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양질의 간식을 제공함

○ 보육교직원 표창대상 인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교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함

### 2. 주요내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9조2항)

- 반기별 ⇒ 연간 4회 이상

○ 영유아 간식비 지원기준 변경(안 제10조)

- 서구 거주자 ⇒ 서구 관내 어린이집 입소아동

○ 표창 대상자 인원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 3. 개정 규칙안 : 붙임

## 4. 의견 제출

이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ccw5321@korea.kr

# 의 견 제 출 서

| | | | | |
|---|---|---|---|---|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5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연간 4회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중 “서구 거주자 중 서구관내”를 “서구관내”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선발하며 매년 5명 이내로 표창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br>① (생 략)<br>② 구립어린이집은 반기별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br>1. ~ 6. (생 략) |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br>① (현행과 같음)<br>② ---------- 연간 4회 이상 ----------. ----------.<br>1. ~ 6. (현행과 같음) |
|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자 중 서구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보육지원 아동 및 장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 서구관내----------. |
| 제13조(평가 및 보상) 조례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br>1. 표창 대상자는 어린이집 각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매년 5명 이내로 표창한다.<br>2.・3. (생 략) | 제13조(평가 및 보상) ----------.<br>1. ---------- 선발한다.<br>2.・3.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영유아보육법】

□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 **제28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국·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45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퇴소조치·친권행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5조)

- 위원의 신분 규정 및 임기(2년, 2차례 연임)
- 긴급 사항에 대한 우선 조치 후 사후 심의

### 3. 조례안 : 붙임 1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6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kgb68@korea.kr

# 의 견 제 출 서

| | | | | |
|---|---|---|---|---|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또는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3.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2호

## 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3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2/3이상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평가위원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평가위원 구성 인원을 2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3이상 포함하도록 개정 (안 제12조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803 호

##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구·용역사업”을 “연구용역사업”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정책실명자”를 “정책실명제”로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사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3호에 따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에는 별지 제2호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별표 4]”를 “별지 제5호”로 한다.

제9조 중 “소관부서”를 “사업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사업부서”로, “발간하여야 한다”를 “발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부서”를 “사업부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소관부서”를 “사업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관부서”를 “사업부서”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

| | | | |
|---|---|---|---|
| ①사업부서 | | ②담당자<br>(연락처) | |
| ③정 책 명 | | | |
| ④선정기준 | | ⑤사업기간 | |
| ⑥주요내용 | | | |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

#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6-01 | 담당부서 작성자 | (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
|---|---|---|---|
| 정 책 명 | | | |
| 사업개요 | □ 추진배경<br>○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br>□ 추진기간 : 20○○.○.○○ ~ 20○○.○.○○<br>□ 총사업비 : ○○○백만원<br>□ 주요내용<br>○<br>○<br>○<br>○ | | |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 사업관련자 현황<br>○ '15.12.20 : '○○복지관 신축계획 수립<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담당 박○○, 과장 이○○, 국장 송○○, 부청장 남○○, 청장, 이○○<br>○ '16. 1.20 : 주민공청회 개최<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담당 박○○, 과장 이○○, 국장 송○○, 부청장 남○○, 청장, 이○○<br>○ '16. 2.10 : 감정평가<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담당 박○○, 과장 이○○,<br>-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대표 ○○○)<br>○ '16. 3.10 : 보상<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담당 박○○, 과장 이○○, 국장 송○○, 부청장 남○○, 청장, 이○○<br>○ '16. 4.20 : 건축설계<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담당 박○○, 과장 이○○, 국장 송○○, 부청장 남○○, 청장, 이○○<br>-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대표 ○○○)<br>○ '16. 7.20 : '○○복지관 신축공사 착공<br>- 관련자 : ○○과 주무관 김○○, 팀장 박○○, 과장 이○○, 국장 송○○, 부청장 남○○, 청장, 이○○<br>- 시공자 : ○○건설(대표○○○), ○○전기(대표○○○), -----<br>- 감리자 : ○○(대표○○○), ○○(대표○○○), ----<br>- 감독자 : ○○과 주무관 김○○, ----------<br>○ '17. 1. 1 : 관련자 변경 ○○과 주무관 정○○, 과장 황○○<br>•<br>• | | |

※ 관련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회의(대책회의, 공청회 등) 시 발언자 등 기재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 ① 등록번호 | ② 정책명 | ③ 사업부서 | ④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6-1, 2016-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

# 정책실명제 내부이력 관리사업 현황

| ① 등록번호 | ② 정책명 | ③ 사업부서 | ④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6-1, 2016-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5호]

# 정책실명제 표지판
(제8조 관련)

| | |
|---|---|
| 시설물명 | |
| 위 치 | |
|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과<br>(전화번호 : ☎ ) |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정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2. 주요내용

○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회의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6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안 제7조)

○ 별지 서식 개정